『공정과 투명』한 절차로 『행정의 품격』을 위한

■■■ 종합감사 결과

2020. 11. .

공주시 감사담당관

▣▣▣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기　　간 : 2020. 11. 23. ~ 11. 26.(4일간)

○ 대　　상 : ▣▣▣

○ 감사범위 : 2017. 11. 1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6명(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 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 등

2. 감사결과

○ 행정상

(단위 : 건)

계	본 처 본			현지처분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 의	
14	5	4		5		

○ 재정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지 급
계	4,197	4,197			
본 처 분	3,555	3,555			
현지처분	642	642			

○ 신분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비고
-	-	-	-	-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징수	감액
계	9 건			5	4		3,555	3,555	
1	주민자치센타 운영 업무 소홀				1				
2	전입자 온누리상품권등 지급 부적정			1					
3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실시			1			92	92	
4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1			3,463	3,463	
5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1				
6	장애인 등록증 회수업무 소홀			1					
7	인감용지 관리 소홀			1					
8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1				
9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1				

○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징수	감액
계	5 건			5			642	642	
1	초과근무 수당 지급 소홀			1			59	59	
2	국내여비 지급 소홀			1			510	510	
3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1			43	43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1			30	30	
5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서류 소홀			1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고

공 고 기 간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비　고
2018.1.31. ~ 2.14	제 5기 ▣▣▣ 주민자치위원 27명	주요 인적사항	
2019.1.11. ~ 1.31	제 6기 ▣▣▣ 주민자치위원 28명	“	
2020.1.30. ~ 2.29	제 6기 ▣▣▣ 주민자치위원 27명	“	

2. 위법・부당내용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이장・통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 ·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까지 연임 할 수 있다.

⑥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 · 면 ·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체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마지막 날까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주민자치위원 주요인적사항을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개하여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데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주민자치위원 주요인적사항을 매년 1월 마지막날까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전입자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온누리상품권 및 종량제쓰레기봉투 지급 현황(2018.1.1. ~ 감사일 현재)

구　　분	지급대상[1]	실 지급자	미지급자	비　고
계	**284**	**197**	**87**	* 상품권 : 1만원권 * 봉투 : 1,000리터
2018년	87	31	56	
2019년	97	85	12	
2020. 1. ~ 감사일 현재	100	81	19	

※ ▣▣▣ 제출자료 재구성

2.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4조(전입 지원금 등)에 따르면 시장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또는 물품(이하 "전입지원금 등"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 전입지원금 등 지원 내용]

지원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역
전입자 공통 지원시책	온누리 상품권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공주특산품 지원(1회)
	쓰레기 봉 투		쓰레기봉투 1,000L 지원 (1회)

1) 지급대상에는 관외(공주시 이외 지역) 1년 미만 전입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수수료 감면)에 따르면 시장은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전입자를 5명 이상 유치한 건물주에게는 연 한 차례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전입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7. 12. 8.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개정으로 관외에서 1년간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시에 전입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1장과 종량제쓰레기봉투 1,000ℓ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위 현황과 같이 전입 지급대상자 284명중 197명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외 1년 이상 전입자 중 미지급자 87명에게 즉시 온누리상품권과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전입자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실시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92,000원(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 사후정산 미실시 공사 현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계약	정산				
합계	3 건	33,380	33,288	92			
☢☢☢☢(≡≡≡≡) 석축 정비공사	식생옹벽블럭 H=1~3m L=43m	11,940	11,913	27	2019.10.15. ~ 2019.11.01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수수료 미정산	A
◉◉◉(▚▚▚) 배수로 설치사업	플륨관(800*700) L=58m	11,900	11,859	41	2019.11.28. ~ 2019.12.16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수수료 미정산	B
▲▲▲(■■■) 옹벽블럭쌓기사업	식생옹벽블럭 H=2.5m L=36m	9,540	9,516	24	2019.10.30. ~ 2019.11.26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수수료 미정산	C

2. 위법·부당사항

가.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시 발급금액 명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석축 정비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를 하였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관련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92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사업 추진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3건의 합계 92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3,463,000원(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 감독소홀 건설공사 현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 급 액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준공금액	정산				
합 계	**9 건**	**127,975**	**124,512**	**3,463**			
♣♣♣ 농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B=3m L=113m 흄관(D=450)L=5m	8,780	8,569	211	2018.11.19. ~2018.12.13	흄관기초 미시공	D
◉◉◉ 농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B=3m L=100m 흄관 L=8m	11,210	10,918	292	2019.10.30. ~2019.11.26	흄관설치 합판거푸집 ⇒ 유로폼 변경시공	E
◐◐◐(◑◑◑) 배수로 복개공사	흄관매설(D=800mm) L=20m /콘크리트 포장 A=36㎡	16,770	15,918	852	2019.10.15. ~2019.11.06	콘크리트포장, 흄관기초 합판거푸집 미시공	F
▒▒▒▒(▤▤▤▤) 배수로 정비공사	식생옹벽블럭 H=3m L=33m	12,680	12,201	479	2019.11.11. ~2019.11.25	기초 합판거푸집 ⇒ 유로폼 변경시공	G
▥▥▥▥▥(▨▨▨▨) 석축 정비공사	식생옹벽블럭 H=1~3m L=43m	11,913	11,482	431	2019.10.15. ~2019.11.01	부직포 미설치	H
▦▦▦▦▦(▩▩▩,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석축쌓기 (H=1~2m)L=50m	18,500	18,260	240	2019.11.11. ~2019.12.08	석축천단거푸집 한쪽만 시공	I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 급 액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준공금액	정산				
◁◁◁(♤♤♤) 마을안길 정비사업	석축쌓기 H=1m L=45m	11,987	11,716	271	2019.04.05. ~2019.04.17	석축천단콘크리트 거푸집 한쪽만 시공	J
◉◉◉ 마을안길 정비사업	석축쌓기 H=1m L=18m	16,105	15,834	271	2019.04.05. ~2019.04.23	석축 천단콘크리트 거푸집 한쪽만 시공	K
▷▷▷▷(♠♠♠) 마을안길 정비공사	흄관매설 (D=1200㎜)L=40m	20,030	19,614	416	2019.10.30. ~2019.11.25	기초합판거푸집 ⇒유로폼 변경시공	L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와 같이 「♣♣♣ 농로 포장공사 외 8건」을 추진하면서 흄관 기초를 미시공하거나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시공하는 등의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 후 준공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

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3,463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9건의 합계 3,463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확인・점검 소홀 현황

< 대상 기간 : 2017. 11. 11. ~ 현재 >

연번	유　형	급여관리 대 상 자	급여관리자			점검현황	비고
		성　명	성　명	관　계	지정일자		
1	발달장애인	♧♧♧	♣♣♣	친인척	2012.03.22.	- 2018. 상반기 통장 출금내역만 있음.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누락 점검결과 '양호'로 체크	
2	발달장애인	●●●	○○○	친인척	2012.03.26.	- 2018. 상반기 증빙자료 일체가 없으나 점검표에는 점검결과 '양호'로 체크	

나.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침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읍면동장은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고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8년 상반기에 ♧♧♧의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점검결과를 '양호'로 작성하였고 황정희는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가 없으나 점검결과를 '양호'로 확인한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 대상기간 : 2017.11.11. ~ 현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일자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1	a	26.03.07.	청각	사망	20180719	부	-	-	
2	b	30.01.03.	지체/ 하지관절	사망	20190707	부	-	-	
3	c	31.05.07.	청각	사망	20190421	부	-	-	
4	d	31.11.07.	지체 (하지관절)	사망	20190901	부	-	-	
5	e	33.07.08.	뇌변병	사망	20181229	부	-	-	
6	f	49.01.24.	지체/ 하지관절	사망	20190123	부	-	-	
7	g	58.01.10.	뇌병변	사망	20180802	부	-	-	
8	h	68.01.01.	뇌병변	사망	20180206	부	-	-	
9	i	89.09.29.	지적	사망	20190803	부	-	-	

나. 위법・부당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 11. 11.부터 현재까지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된 9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미회수 하였으며,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발송 하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된 9명에 대하여 즉시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감용지 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인감용지 관리 현황

(단위:매)

구　　분	보유수량 (매)	보관장소			비　고
		이중 캐비닛	서고	기타	
인감 용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포함)	11,165	1,619	9,500	46	'20.11.24. 기준

□ 인감용지 보관 현황





➠ 인감발급용지를 이중캐비넷이 아닌 서고에 보관

나. 위법・부당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4항 3호에 의거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서명확인 및 인감사무편람 」에 의하면 구입된 인감용지는 “용지관리 지침” 에 따라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되, 용지관리 책임자(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열쇠관리자(인감 또는 본인서명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인감용지의 사용량은 일일결산 하며 인감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 역시 인감증명서 용지와 동일하게 관리책임자(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명확하게 관리하고 이중캐비닛 등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을 예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책임자 이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일 일일결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인감용지(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포함)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중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함에도 9,546매를 서고 및 기타 장소에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관리하는 등 인감용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인감용지(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포함)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중 캐비닛에 보관・관리 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도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훈련(교육)	비 고
2017	미수립	미구성	-	1회	
2018	미수립	미구성	-	1회	
2019	미수립	미구성	-	1회	
2020	미수립	미구성	선임	예정	

나. 위법 · 부당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 · 신체와 건축물 ·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러함에도 ▣▣▣에서는 2017~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계획의 수립·시행하지 않았으며, 연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소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하자검사 현황

구 분		정기 하자검사			만료검사			비 고
		대상	검사	미검사	대상	검사	미검사	
계		638	0	529	68	4	65	
2017년	하반기	73	-	73	8	-	8	
2018년	상반기	69	-	69	12	-	12	
	하반기	77	-	77	23	-	23	
2019년	상반기	84	-	84	7	-	7	
	하반기	113	-	113	0	-	1	
2020년	상반기	113	-	113	4	4		
	하반기	109	-	-	14	-	14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706건(정기 638건, 만료 68건)에 대하여 정기 529건, 만료 65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